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96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김태선 · 조계원 · 서영교
박홍배 · 김주영 · 박 정
이병진 · 안호영 · 이학영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

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계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 제170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급박한 위험”을 “위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 중지와 대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52조(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있으며,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위험----- ----- ----- ----- -----.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 중지와 대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 8. (생략)	<u>청구할 수 없다.</u> 제170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2조제4항(제166조의2</u> <u>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u> <u>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u> <u>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u> 2. ~ 8. (현행과 같음)
--	--